

2018.09.20

문의사항
박민영 관세사 T/ 02-6011-3033 메일/ mypark@esein.co.kr
박성희 차장 T/ 02-6011-3053 메일 / shpark@esein.co.kr

'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' 개정 안내

1. 개요

'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'가 일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2. 주요사항

◇ 개정이유

- 수입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(수출신고 수리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등)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 수입된 수출용 원재료로 환급 가능
- 다만, ① 원재료의 가격 변동이 심하거나, ② 둘 이상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등의 사유로 과다환급 우려가 있는 품목은 수입신고필증의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, 세율별 수입물량비중에 따라 환급하도록 규정
- 현행 '세율별 수입물량비중 산정방법'은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에 따라 환급물량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, 전년도 수입실적이 없는 경우 세율별 수입물량비중을 산정할 수 없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

2018.09.20

문의사항
박민영 관세사 T/ 02-6011-3033 메일/ mypark@esein.co.kr
박성희 차장 T/ 02-6011-3053 메일 / shpark@esein.co.kr

2. 주요사항

◇ 개정내용

- 1) 多세율 원재료의 '세율별 물량 비중 산정방법' 개정(§7⑥)
 - 전년도 수입이 없는 경우 아래 비중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환급
 - ① 직전 3개월 간 수입한 전체물량의 세율별 비중
 - ② 수출이행기간(2년) 내 수입한 전체물량의 세율별 비중
- 2) 세율별 비중 조정안 이후의 환급방법 명확화(§8③)
 - 전년도 수입이 없어 직전 3개월 간 수입물량 비중을 사용한 경우, 해당연도에는 계속하여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되, 이후 직전 3개월 간 수입이 없으면 ① 전년도 비중 ② 2년 간 수입비중을 순차적 적용
- 3) 서식 정비: 조정신고방법의 개정에 따른 신고서식 보완 (별지 제2호)

◇ 개정 조문별 법령위임근거

조문번호	법령위임근거 조항
○ 제7조, 제8조	○ 환급특례법 제10조제4항 ○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호
○ 별지 서식	○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33조

◇ 시행일자 : 2018. 10. 1.

「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」 신규 조문 대비표

2018. 9.

관 세 청
세 원 심 사 과

현행	개정안	개정 사유
<p>제7조(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제한대상 물품) ①~⑤ (생략) (신설)</p> <p>⑥ 제1항에 따라 환급등을 신청하려는 업체는 해당 연도에 최초로 수출, 판매, 공사, 공급 또는 국내거래된 물품에 대한 환급등을 신청하기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<u>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신고서</u>를 작성하여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	<p>제7조(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제한대상 물품) ①~⑤ (현행과 같음)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수입물량이 없어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환급물량을 세율별로 안분하여 해당 수입신고필증을 환급등에 사용하여야 한다.</p> <p>1. 제7조제1항 각 호의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의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</p> <p>2. 법 제9조제1항에서 정한 기간 동안의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</p> <p>⑦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환급등을 신청하려는 업체는 해당 연도에 최초로 수출, 판매, 공사, 공급 또는 국내거래된 물품에 대한 환급등을 신청하기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<u>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신고서</u>를 작성하여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	<p>○정확한 환급을 위한 규정 정비 - 불연속적 원재료 수입업체(신생업체 포함)에 대한 세율별 수입물량 조정 규정 신설</p> <p>○조항신설, 서식 개정에 따른 조문변경</p>

현행	개정안	개정 사유
<p>제8조(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조정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을 조정 받으려는 업체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<u>제7조제1항의 수출신고수리일 등이</u>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의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에 따라 환급물량을 세율별로 안분하여 해당 수입신고필증을 환급등에 사용할 수 있다.</p> <p>1.~2. (생략)</p> <p>(<u>신설</u>)</p>	<p>제8조(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조정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을 조정 받으려는 업체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<u>제7조제1항 각 호의 날이</u>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의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에 따라 환급물량을 세율별로 안분하여 해당 수입신고필증을 환급등에 사용할 수 있다.</p> <p>1~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을 조정</u>한 경우 해당 연도에 수출, 판매, 공사, 공급 또는 국내거래된 물품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<u>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.</u> 단, <u>제7조제1항 각 호의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수입실적이 없는 경우 제7조에 정한 절차에 따라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을 적용한다.</u></p>	<p>○용어통일을 위한 문구수정</p> <p>○정확한 환급을 위한 규정 정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과다환급예방을 위하여 임의적 조정 비율적용 방지(해설서 내용 상향) - 비중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적용 명확화
<p>제12조(재검토기한) 관세청장은 「훈</p>	<p>제12조(재검토기한) 관세청장은 「훈</p>	<p>○행정규칙 재검토 내용 반영에 따라</p>

현 행	개정안	개정 사유
<p>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p>	<p>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p>	<p>기한 변경</p>
	<p>부칙</p>	
	<p><u>제1조(시행일)</u> 이 고시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</p>	
	<p><u>제2조(세율별 수입물량비중 조정 적용례)</u> 제7조제6항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수출(판매, 공사, 공급 또는 국내거래를 포함한다)된 물품에 대한 환급 등부터 적용한다.</p>	
<p>※ 별지 개정내용은 “붙임” 참조</p>		
<p>[]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신고서 []직전 3월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조정 신고서 (제7조제6항, 제8조제2항관련)</p>	<p>[]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신고서 []직전 3월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(조정) 신고서 []법제조치항의 기간에 대한 수입물량 비중 신고서 (제7조제7항, 제8조제2항 관련)</p>	<p>○ 전년도 또는 직전 3개월 수입물량 비중 조정 불가 시 수출이행기간 내 수입물량 비중조정방법 시행을 위한 서식 개정</p>

[]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신고서
 []직전 3월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(조정) 신고서
 []법제9조1항의 기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신고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신고인	상 호			대표자	
	주 소				
	전화번호		통관고유번호		
	제조장명				

품목번호 (HSK)	수입물품	세율	수입물량	단위	수입비중(%)	산정 연도 (산정기간)
		합계		합계		

「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」 제7조제7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라 수입원재료에 대한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을 (조정) 신고합니다.

20 년 월 일

신고인 : (서명 또는 인)

세관장 귀하

결재	담당	주무	과장
----	----	----	----

첨부서류	구매계획서, 매매계약서 등 (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을 조정 신고하는 경우에 한함)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---

유의사항

1. “품목번호”란에는 「관세법 시행령」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·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HSK10단위 품목번호를 기재하되, 원유는 HSK 8단위(2709.00-10)를 기재한다.
2. “수입비중”란에는 세율별 수입비중(%)은 소수점 이하를 절사하여 정수로 산정하되, 수입비중의 합계가 100이 되도록 고세율부터 저세율의 순으로 1%씩 가산한다.
3. “산정기간”란에는 “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” 제8조제2항에 따라 세율별 수입물량비중 조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산정기간을 기재한다.
4. 첨부서류는 제7조제1항의 수출신고수리일 등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의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을 조정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합니다.